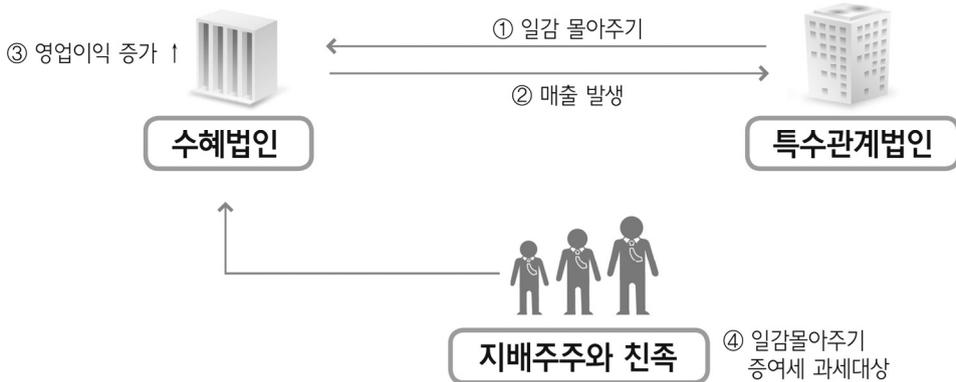


2021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설명자료

- 국세청, 2021. 6

제1장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개요 및 과세요건 등

1 개요



자녀 등이 주주인 법인에게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자녀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기 하여 2011.12.3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함)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 거래(이하 '일감몰아주기' 라고 함)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이 신설 되었으며,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분부터 적용합니다(법률 제11130호, 2011.12.31, 상증법 부칙 3).

즉,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법인의 영업이익은 증가상승을 통하여 주주의 이익으로 전환되므로 수혜법인의 영업이익과 주주의 이익은 장기적으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아 수혜법인의 영업이익 중 일감몰아주기와 관련된 부분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2 과세요건

- ①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 ②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 30%(중소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할 것
- ③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한계보유비율 3%(중소·중견기업 10%)를 초과할 것

가. 수혜법인

- 수혜법인이란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특수관계 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 30%(중소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하는 내국법인을 말합니다(상증법 §45의3①).

* 일반기업이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20%초과하고,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한 경우 포함

나. 지배주주

- 지배주주는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합니다.

- ◎ 최대주주등(상증령 § 19②)
 -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
 - * 특수관계인 : 상증령 § 2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1) 지배주주의 판정

- ①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 해당 개인주주

- ◎ 직접보유비율(상증령 § 34의3①1)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으로 나눈 비율
 * 자기주식은 제외되므로 지분계산시 환산
 예) 수혜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100주, 자기주식 20주(20%), 갑 30주(30%)

$$\left[\frac{\text{보유 주식수}}{\text{발행주식수} - \text{자기주식}} \times 100 \right] = \left[\frac{30}{100-20} \right] = 37.5\%$$
 * 간편식 : $30\% \div (1 - 20\%) = 37.5\%$

- ②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 ⇒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 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그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다만, 수혜법인의 주주등 이면서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와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는 지배주주로 보지 않습니다(상증령 § 34의3①2).

◎ 간접보유비율(상증령 § 34의3②)

- 개인과 법인 사이에 주식보유를 통하여 한 개 이상의 법인(간접출자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간접출자관계)에 각 단계의 직접보유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 비율
*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 간접출자법인이 수혜법인에 출자한 비율

- ③ 지배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 수혜법인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해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서 다음 순서에 따른 자를 지배주주로 봅니다(상증령 § 34의3①2 후단, 상증규칙 § 10의7).
 - ㉠ 본인과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더 큰 경우의 그 본인
 - ㉡ 본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액이 더 큰 경우의 그 본인
 - ㉢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수혜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자

(2) 지배주주의 판정기준일

-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증여시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지배주주 판정시 간접출자법인의 범위 및 간접보유비율의 계산

- 지배주주 해당여부 판정시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개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보유를 통하여 한 개 이상의 법인(간접출자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간접출자관계)에 각 단계의 직접보유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 비율을 말합니다.
 - 이 경우 개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간접출자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각각의 간접출자관계에서 산출한 비율을 모두 합하여 산출하며, 여기에서 둘 이상의 간접출자관계란 병렬적인 간접출자관계를 말합니다(상증령 § 34의3②).
 - ※ 지배주주 판정시 간접출자법인의 범위는 증여의제이익 계산을 위한 간접보유비율 계산시 간접출자법인의 범위와 다릅니다. 지배주주 판정시의 간접출자법인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이 지배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간접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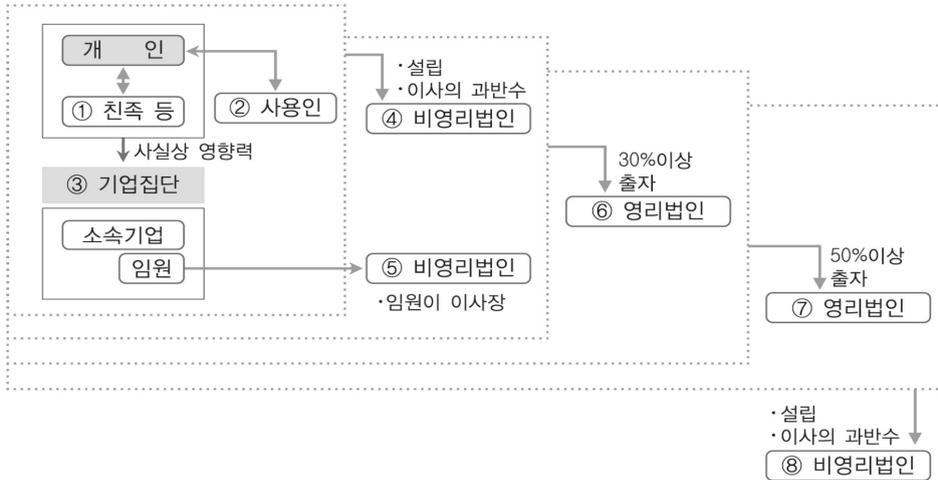
(1) 특수관계법인의 범위

- 특수관계법인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상증령 제12의2 제1항 제3호 ~ 제8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비영리법인 포함)을 말합니다.



[지배주주의 특수관계법인 요약도]

* 번호는 상증령 § 2의2① 각호와 동일



◎ 특수관계인의 범위(상증령 § 2의2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특수관계인'의 정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제1항(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말합니다. 이하 같다)을 포함합니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합니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 등"이라 합니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2)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 해당 여부 판단기준일

-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비율 계산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계산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이 경우 각각의 매출액은 '과세제외매출액'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상증법 §45의3①, ④ 및 상증령 § 34의3⑧).

| |
|--|
| $\text{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frac{\text{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 \text{과세제외매출액}}{\text{수혜법인 사업연도 매출액} - \text{과세제외매출액}} \times 100$ |
|--|

※ 부칙에 따른 제외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분자)에서 제외

-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매출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하며(상증령 §34의3⑨) 조세회피 목적 등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간에 계약·협정 및 결의 등에 따라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금지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혜법인의 매출액에 포함하여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을 계산합니다(상증령 §34의3⑭ 2018.2.13. 개정).

-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비율 계산시 과세제외매출액(상증령 §34의3⑧)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과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각각 제외하여 비율을 계산합니다(상증법 §45의3④ 2014.1.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text{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50\%)} = \frac{\text{A·B법인에 대한 매출액(60억원)} - \text{과세제외매출액(20억원)}}{\text{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100억원)} - \text{과세제외매출액(20억원)}} \times 100$$

(4) 사업연도 중에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은 그 법인과 사업연도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서면법규과-1487, 2012.12.14.).

(예시) 2020.12.31. 현재 지배주주인 [갑]과 A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나, 그 특수관계 성립일이 2020.7.1.이고 수혜법인의 A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아래와 같은 경우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계산 시 특수관계법인(A법인)에 대한 매출액은?

| 구 분 | 2020. 1. 1.~6.30. | 2020. 7. 1.~12.31. | 연간매출액 합계 |
|------------|-------------------|--------------------|----------|
| A법인에 대한 매출 | 20억원 | 30억원 | 50억원 |

답) 특수관계 성립일 이후 매출액 30억원이 아닌 연간 전체 매출액 50억원

(5)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수혜법인과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 특수관계법인에 포함

- 2014.2.21. 개정 상증령 부칙 제14조(특수관계법인의 범위 및 과세제외매출액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에는 “이 영 시행 당시 수혜법인이 속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이 아닌 다른 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은 제34조의2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종전의 제34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른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2014.2.21.(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이 모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으로서 서로 다른 기업집단인 경우에 한하여 특수관계법인으로 보지 아니합니다(상속증여세과-464, 2014.11.28.).

| 구 분 | 사업연도 개시일 | |
|--|-----------------|-----------------|
| | 2014. 2. 21. 이전 | 2014. 2. 22. 이후 |
| 수혜법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이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과 거래시 | 특수관계법인 제외 | 특수관계법인 해당 |

(6) 과세제외매출액 해당 여부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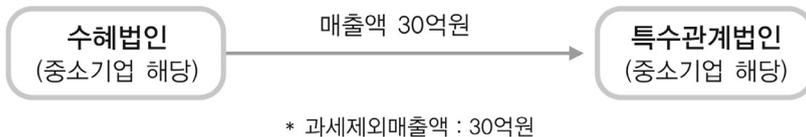
(가) 과세제외매출액 해당 여부 판단

● 2014.2.21. 신설된 규정으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계산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및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되는 과세제외매출액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 중 두 개 이상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상증령

§ 34의3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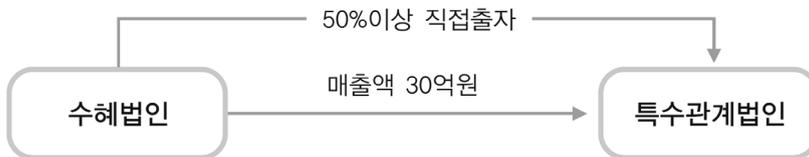
- ◎ 과세제외매출액(상증령 § 34의3⑧)
1.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2.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3.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 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4.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3에 따른 자회사(“자회사”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손자회사(같은 법 제8조의2 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를 포함하며, “손자회사”라 한다)와 거래한 매출액
 5.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으로 한정한다)과 거래한 매출액
 6.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7.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 매출액
 8. 국가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국가 등이나 공공기금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에 거래한 경우 해당 법인과와의 거래

①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로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중소기업에 한정)과 거래한 경우 해당 매출액 전액(상증령 § 34의3⑧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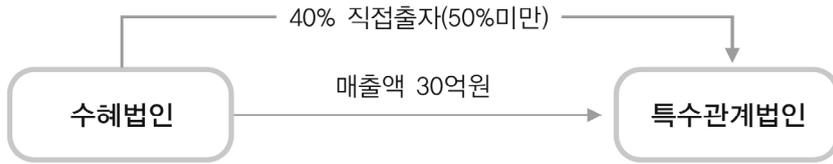
* 과세제외매출액 : 30억원

②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은 해당 매출액 전액(상증령 § 34의3⑧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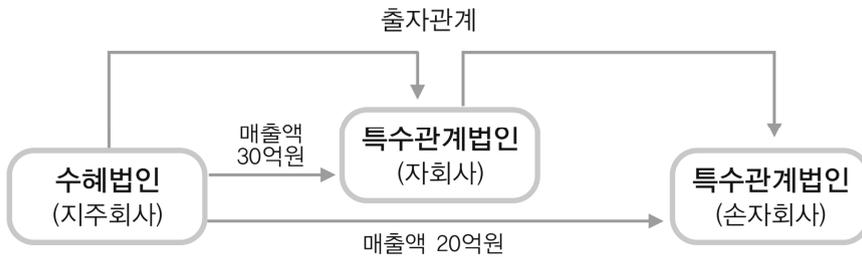
* 과세제외매출액 : 30억원

③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상증령 § 34의3⑧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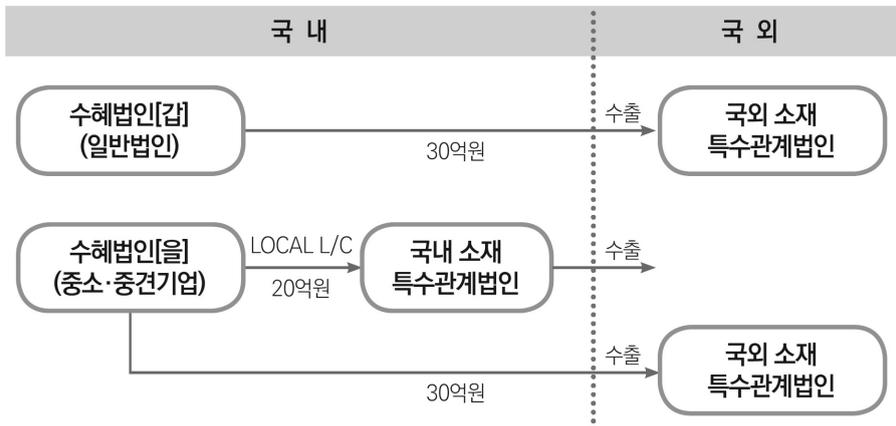
* 과세제외매출액 : 30억원 × 40% = 12억원

- ④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3에 따른 자회사 및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4에 따른 손자회사(같은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를 포함)와 거래한 매출액 전액(상증령 § 34의3⑧4)



* 과세제외매출액: 30억원 + 20억원 = 50억원

- ⑤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으로 한정한다)과 거래한 매출액 전액(상증령 § 34의3⑧5)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을 산정할 때 과세제외매출액에서 제외되는 수출목적 국내거래는 부가가치세 법상 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통한 영세율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서면-2016-상속증여-2771, 2016.1.18.)

- ⑥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전액(상증령 § 34의3⑧6)

※ 2014.2.21. 상증령 부칙 제14조 제1항(특수관계법인의 범위 및 과세제외매출액에 관한 경과조치)

제2항(경과조치 개정)에서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 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해당 매출액은 2016.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까지는 종전과 같이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계산시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만 직접 제외하는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 구 분 | 사업연도 개시일 | |
|---|---------------------|---|
| | 2016. 12. 31. 이전 개시 | 2017. 1. 1. 이후 개시 |
| ⑤ 제품·상품 수출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⑥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적 거래 |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서 제외(분자) | 수혜법인 사업연도 매출액 및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서 제외(분자, 분모) |

- ⑦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 매출액 전액(상증령 §34의3⑧7, 2015.2.3.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⑧ 국가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국가 등이나 공공기금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 해당 법인과 거래(상증령 §34의3⑧8, 2020.2.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라.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30% 또는 50%)을 초과

-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법인이 수혜법인이 되는 것입니다(상증령 §34의3⑤).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상거래비율(상증법 § 45의3①, 상증령 § 34의3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혜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서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50, 중견기업인 경우 100분의 40, 그 밖의 법인은 100분의 30(정상거래비율 2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원 초과하는 경우) ◆ 중소기업(상증령 § 34의3④) | |
|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 업종 | 소비성서비스업 이외 모든 업종 |
| 업종별 규모기준 |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규모기준 이내일 것 |
| 자산 규모 |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
| 독립성 기준 |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 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제외 2.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직·간접 30%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제외 3. 관계기업 합산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규모 기준 이내일 것 |



| | |
|----|--|
| 유예 | <p>규모증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업연도와 그 다음 3년(최초 1회에 한함)</p> <p>* 유예제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의 합병 2. 유예기간 중인 기업과의 합병 3. 독립성 기준 미충족(관계기업 합산 매출액 규모기준 제외) 4. 창업일 속한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 중소기업기준 초과 |
|----|--|

◆ 중견기업(상증령 § 34의3④)

| | |
|--------|--|
|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3항 |
| 업종 | 소비성서비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이외 모든 업종 |
| 독립성 기준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제외 2.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법인이 직·간접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제외 |
| 매출액 기준 | 직전 3년 평균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

3 수증자

● 수증자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중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한계보유비율 3%(중소·중견기업 10%)를 초과하는 자입니다(상증법 § 45의 3①, 상증령 § 34의3⑥).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중 지배주주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 기간에 대한 증여의제이익의 납세 의무자는 증여시기인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배주주가 되는 것임(서면법규과-1487, 2012.12.14)

○ 친족의 종류와 범위

- 혈족:혈연관계가 있는 친족
 - 부계혈족:친가의 혈족들(조부모, 아버지, 백숙부, 고모 등)
 - 모계혈족:외가의 혈족들(외조부모, 외숙부, 이모 등)
- 인척: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 혈족의 배우자:형수, 제수, 고모부, 이모부, 백숙모, 외숙모, 조카며느리 등
 - 배우자의 혈족:장인, 장모, 처형, 처남, 처제, 처조카 등
 -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동서

4 증여자

- 증여자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상증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상거래비율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하는 경우의 지배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입니다.
- 수증자의 재산으로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도 증여자는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상증법 §4의2⑤).

5 증여시기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규정 적용시 증여시기는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입니다(상증법 §45의3③).
 - 이 경우 수혜법인의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6조 [사업연도], 제7조 [사업연도의 변경],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를 준용하므로 연도 중에 합병되는 경우 등에는 그 합병등기일 등이 증여시기가 됩니다.
 - * 법인이 폐업한 경우에도 해산 및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속 존속하는 것이므로 사업연도별로 결산을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6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외

가. 외국법인

- 수혜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을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외국법인은 수혜법인에서 제외

나. 외국인 투자기업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 * 외국인투자가(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연한 외국인)가 출자한 기업
 - ** 외국법인을 포함한 개념으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그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보지 않음

제2장 증여의제이익 계산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증여이익의 계산

- ①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text{세후영업이익} \times [\text{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5\%] \times [\text{주식보유비율} - 0\%]$
- ②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text{세후영업이익} \times [\text{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20\%] \times [\text{주식보유비율} - 5\%]$
- ③ 수혜법인이 중견기업인 경우
 $\text{세후영업이익} \times [\text{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50\%] \times [\text{주식보유비율} - 10\%]$

1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 세후영업이익 = (가 - 나) × 다

가.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 나.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
 다. 과세매출비율

가.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

-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은 수혜법인의 영업손익(「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에 대해 아래 항목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입니다(상증령 § 34의3⑩1).

● 세무조정후 영업손익 (① ± ②)

- ①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손익 (매출액 - 매출원가 - 판매비 및 관리비)
- ② 영업손익과 관련된 아래 세무조정사항
 - ㉠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른 감가상각비 관련 세무조정사항
 - ㉡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사항
 - ㉢ 「법인세법」 제34조에 따른 대손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사항
 - ㉣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관련 세무조정사항
 - ㉤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 관련 세무조정사항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퇴직보험료 등 관련 세무조정사항
 - ㉦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재고자산의 평가 관련 세무조정사항

(주의) 영업손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영업손익'을 말하므로, 세무조정 전 영업손익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르지 않은 회계처리'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고서 첨부서류인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부표 1 및 같은 서식 부표 2)'에는 영업손익과 관련된 7개 세무조정사항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르지 않은 회계처리'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 기업회계기준에 따르지 않은 회계처리사항 예시
- ① 매출 누락액
- ② 계정과목 분류 오류 : 매출, 매출원가, 판매비·관리비를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 가액
- ③ 가공계상한 매출원가 및 판매비·관리비
- ④ 복리후생비, 접대비 등 손금 중 업무와 관련없는 사적경비 손금부인액

나.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

- ◎ 세무조정후 영업손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 (① × ②)
- ①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
 -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세액
- ② 세무조정후 영업손익 ÷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 * ②의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다. 과세매출비율(상증령 § 34의3⑩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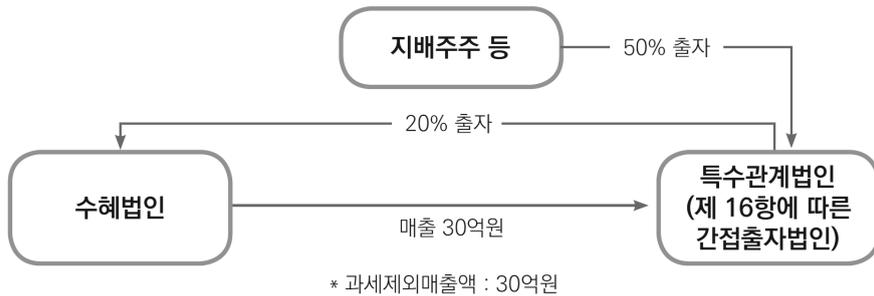
$$\text{과세매출비율} = 1 - \left(\frac{\text{과세제외매출액(추가되는 과세제외매출액 포함)}}{\text{수혜법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 \right)$$

2 추가 과세제외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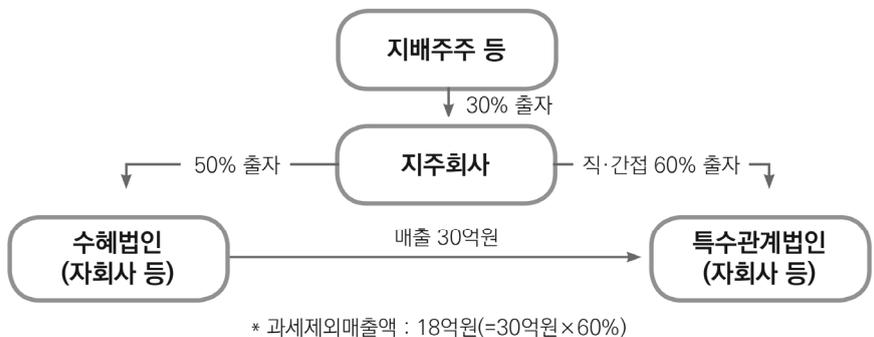
-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과세매출비율을 산정할 때에는 앞에서 설명한 “과세제외매출액” 7개 유형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지배주주 등의 출자관계별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추가되는 과세제외매출액”이라 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을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두 개 이상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상증령 § 34의3⑫).
-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은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서 “과세제외매출액” (8개 유형) 차감한 후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28, 2015.03.13.).

- ◎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상증령 § 34의3⑫)
1. 수혜법인이 상증령 제34조의3 제16항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2. 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그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지주회사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다만,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과 지주회사를 통하여 각각 간접출자관계에 있는 경우로 한정
 3.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지배주주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4. 상증령 제34조의3 제16항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이하 “제16항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이라 함)의 자법인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그 간접출자법인의 다른 자법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 매출액에 그 간접출자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다만, 지배주주등 및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간접출자법인 제외)이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과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간접출자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정

① 수혜법인이 상증령 제34조의3 제16항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상증령 § 34의3⑫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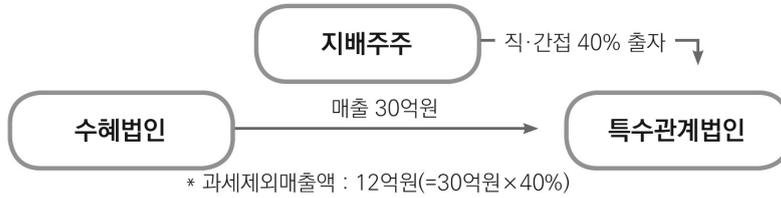


② 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그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지주회사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상증령 § 34의3⑫2). 다만,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과 지주회사를 통하여 각각 간접출자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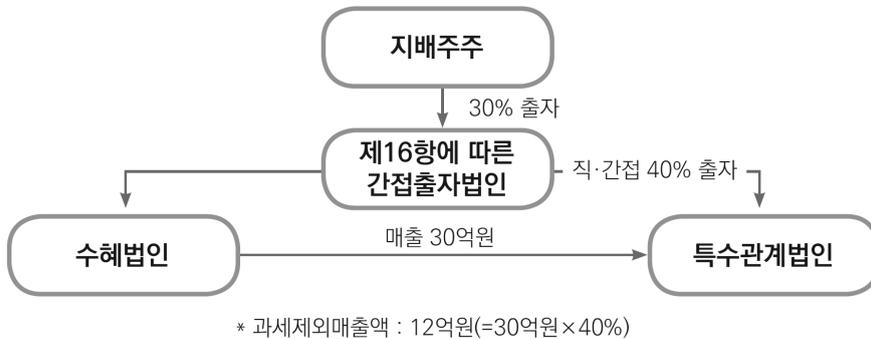


③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지배주주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

유비율을 곱한 금액(상증령 § 34의3②3).



- ④ 상증령 제34조의3 제16항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의 자법인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그 간접출자법인의 다른 자법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 매출액에 그 간접출자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상증령 § 34의3②4, 20.2.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지배주주등 및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간접출자법인 제외)이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과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간접출자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정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2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지주회사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은 지주회사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하며 동조 제12항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지배주주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은 지배주주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 2016.1.4.)

◆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의 적용범위 (상증령 § 34의3②)

☞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은 증여의제이익 계산식에서 지배주주등의 출자관계별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할 때(과세매출비율 산정시 적용)와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과-82, 2014. 04. 02.)

- 과세요건 판단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left[\frac{\text{특수관계법인들에 대한 매출액} - \text{과세제외매출액}}{\text{수혜법인의 총매출액} - \text{과세제외매출액}} \times 100 \right]$$

-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left[\frac{\text{특수관계법인들에 대한 매출액} - \text{과세제외매출액} - \text{추가 과세제외매출액}}{\text{수혜법인의 총매출액} - \text{과세제외매출액} - \text{추가 과세제외매출액}} \times 100 \right]$$

- 세후영업이익 계산시 과세매출비율

$$1 - \left(\frac{\text{과세제외매출액} + \text{추가 과세제외매출액}}{\text{수혜법인의 총매출액}} \right)$$

3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계산

●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식 중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과 의 거래비율” 이란 “정상거래비율의 1/2[수혜법인이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을 말합니다. (상증법 § 45의3①).

- 이 경우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은 수증자인 각 주주별로 “추가되는 과세제외 매출액” 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여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상증령 § 34의3②).

* 추가되는 과세제외매출액은 과세요건 판단시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에는 반영하지 않으며, 수증자별 증여의제이익 계산시에만 반영하는 것임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①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left(\frac{\text{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 \text{과세제외매출액(추가분 포함)}}{\text{수혜법인의 총매출액} - \text{과세제외매출액(추가분 포함)}} \times 100 \right) - 5\%$$

② 수혜법인이 중소(50%)·중견(40%)기업인 경우

$$\left(\frac{\text{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 \text{과세제외매출액(추가분 포함)}}{\text{수혜법인의 총매출액} - \text{과세제외매출액(추가분 포함)}} \times 100 \right) - 50 \cdot 20\%$$

4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계산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직접+간접) | 일반기업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
| | | 주식보유비율-0% | 주식보유비율-10 % |

-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세후영업이익과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에 곱하는 수증자의 주식보유비율은 각 주주별로 수혜법인에 대한 직·간접주식보유비율에서 한계보유비율(중소 10%, 중견 5%)을 차감한 비율을 말합니다.

※ 일반기업은 주식보유비율에서 차감하지 않고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합니다.

- 한계보유비율 차감 순서(상증령 § 34의3⑩) (중소·중견기업만 해당)
 -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이 있는 경우 간접보유비율에서 먼저 차감
 -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간접보유비율이 낮은 것에서부터 차감
 - 간접보유비율이 1000분의 1(0.1%)미만인 경우의 간접출자관계는 제외되므로 한계보유비율 차감대상이 아님.

- 수증자의 간접보유비율 계산을 위한 간접출자법인의 범위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지배주주등과 수혜법인 사이에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 중 상증령 제34조의3 제1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만을 말합니다.
 - 이는 수혜법인에 직접출자한 경우에만 고려할 경우 제3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우려가 있어 간접출자비율을 포함하되 소수의 지분을 출자한 경우까지 확대되는 경우 과세실익은 미미하면서 계산만 복잡해지므로 아래와 같은 일정 범위의 법인으로 제한한 것이며, 앞에서 살펴본 지배주주 판정을 위한 간접보유비율 계산방법과 다르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간접출자법인의 범위 비교
 - 지배주주 판정시(상증령 § 34의3②)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이 지배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간접출자관계에 있는 법인
 -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상증령 § 34의3⑩)
 - 지배주주 등과 수혜법인 사이에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
 - ① 지배주주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
 - ② 지배주주 등과 ①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
 - ③ ① 및 ②의 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제되어 있는 경우 해당 법인



5 증여의제이익 계산

◎ 증여의제이익 계산

- 각 수증자별로 계산(법인유형에 따라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이 달라짐)
 - ①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text{세후영업이익} \times [\text{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5\%] \times [\text{주식보유비율} - 0\%]$
 - ②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text{세후영업이익} \times [\text{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20\%] \times [\text{주식보유비율} - 5\%]$
 - ③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text{세후영업이익} \times [\text{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50\%] \times [\text{주식보유비율} - 10\%]$
-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간접보유비율 2이상인 경우는 각각 계산)로 구분하여 계산한 후 합함
- 배당받은 소득에 대한 일정금액 공제

가. 신고기한 내 배당받은 경우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

●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상증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봅니다(상증령 §34의3⑬).

- ① 수혜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이하 “배당가능이익”이라 함)으로 합니다.

$$\text{배당소득} \times \frac{\text{직접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text{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 배당가능이익**} \times \text{지배주주등의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

* 상증령 § 34조의2⑪에 따라 지배주주 등의 수혜법인에 대한 출자관계별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 중
 ** 배당가능이익 =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 + 이월이익잉여금 - 이월결손금 - 이익준비금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①)

-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후 당기순이익에 이월 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1. 법 제18조 제8호에 해당하는 배당

2.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제73조 제2호가목부터 다목 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 다만, 제75조 제3항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 투자회사등의 제7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한다.

②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직접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 | | | | |
|-----------------|-----------|------------|----------------|---------|
| 배당소득 | 간접출자법인의 | 수혜법인의 | 간접출자법인의 | 지배주주등의 |
| × | [사업연도 말일 | +(사업연도 말일 | × 수혜법인에 대한)]× | 간접출자법인에 |
| | 배당가능이익 | 배당가능이익 | 주식보유비율 | 대한 |
| | | | | 직접보유비율 |

나. 특수관계법인이 2 이상인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

- 이익을 준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도 하나의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합니다(상증령 §34의3⑰).

다. 지배주주가 다수의 수혜법인을 보유한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

- 지배주주 1명이 다수의 수혜법인을 보유한 경우 과세대상 증여의제이익은 수혜법인별 · 지배주주별로 각각 계산합니다(서면법규과-1487, 2012.12.14).

라. 증여세 합산과세 배제

-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상증법 §47②)
 -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는 합산배제증여재산으로 분류되어 개별 건별로 과세되므로 합산하지 아니합니다(상증법 §47①).

마. 요약

| 수혜법인 | 과세 요건 | 요건 충족 | 증여의제이익 계산 |
|------|--------------|-------|---|
| 중소기업 | 주식보유비율 | > 10% | $\text{세후영업이익} \times [\text{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50\%] \times [\text{주식보유비율} - 10\%]$ |
| | 특수관계 법인거래 비율 | > 50% | |

| | | | | |
|--------------------------|-----------------|-------|---|--|
| 중견기업 | 주식보유비율 | > 10% | ⇒ |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거래 비율-20%]×[주식보유비율- 5%] |
| | 특수관계 법인거래비율 | > 40% | | |
| 일반기업 (공시대상기업 집단포함) | 주식보유비율 | > 3% | |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거래 비율-5%]×[주식보유비율- 0%] |
| | 특수관계 법인거래 비율 | > 30% | | |

* 요건판단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frac{\text{특수관계법인들에 대한 매출액} - \text{과세제외매출액(8개)}}{\text{수혜법인의 총매출액} - \text{과세제외매출액 (8개)}}$$

* 증여의제이익계산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frac{\text{특수관계법인들에 대한 매출액} - \text{과세제외매출액(8개)} - \text{추가 과세제외매출액(4개)}}{\text{수혜법인의 총매출액} - \text{과세제외매출액(8개)} - \text{추가 과세제외매출액(4개)}}$$

제3장 증여세 신고납부 등

1 증여세 신고 및 납부기한

●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기한은 수혜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입니다(상증법 § 68①, § 70).

* 2020년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기한이 2021.3.31.이므로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2021.6.30.입니다.

2 과세관할

●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때 일반적인 경우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등이 과세하나

- 2014.1.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수혜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해야 합니다.

◆ 과세관할(상증법 § 6③)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1. 수증자와 증여자가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

2.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증여자가 제38조 제2항, 제39조 제2항, 제39조의3 제2항,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라 의제된 경우

3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과세된 주식을 양도할 때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에는 증여의제이익을 반영하여 계산합니다(소득령 §163①).

$$\text{양도차익} = \text{양도가액} - [\text{취득가액} + (\text{증여의제이익} \times \frac{\text{양도 주식수}}{\text{보유 주식수}})]$$

제4장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신고서 작성방법 등

1 신고서 작성순서

1

▶ 수증자 등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 (부표 1)

- 수증자 및 증여자
가. 수혜법인

나. 지배주주

다. 수증자

라. 특수관계법인
및 증여자

나-1. 수혜법인 지배주주 판정을 위한
간접보유비율 신청(부표 2)

다-1. 수증자 간접보유비율(간접출자법인
해당여부 및 간접보유비율) (부표 3)

라-1.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
(증여자 등) (부표 4)

2

▶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Ⅱ) (부표 5)

- 증여세 과세가액



3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별지 제 10호의3)

- 수증자, 증여자, 증여세 과세가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등

2 신고서 작성 유의해야 할 사항

● 신고서상 주식보유비율 등 지분을 표기방법

(예시1)

- 수혜법인(A, 대기업)에 대한 1차 법인주주(B)의 주식보유비율 21.00%
- 1차 법인주주(B)에 대한 지배주주 甲의 주식보유비율 30.27%
- 이 경우 지배주주 甲의 간접보유비율은 6.3567%(=21.00% × 30.27%)로 계산함.
다만, 신고서상 지분을 표기는 소숫점 이하 둘째자리인 6.36%*로 함.
* 소숫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신고서상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등 비율 표기방법

(예시2)

- 수혜법인A의 2020사업연도 매출액 12,000백만원
-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4,837백만원
- 이 경우 수혜법인 A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은 40.3083%(=4,837백만원/12,000백만원 × 100%)로 계산함. 다만, 신고서상 비율 표기는 소숫점 이하 둘째자리인 40.31%로 함.

● 신고서 서식에 표기된 산식에도 불구하고 세후영업이익 및 증여의제이익 등을 계산할 경우 주식보유비율,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등은 본래의 값에 의해 계산하여야 함.

※ 신고서상 표기된 비율 등에 의해 계산할 경우 증여의제이익 등이 왜곡될 소지가 있음

(예시3)

- 수혜법인A의 세후영업이익은 12억원일 경우, 甲의 간접보유분 증여의제이익은?

답) 26,933,338원

[잘못된 계산] 12억원 × (40.31%-5%) × 6.36% = 26,948,592원

[올바른 계산] 12억원 × [4,837백만원/12,000백만원-5.00%] × [21.00%×30.27%] = 26,933,338원

<2021년 신고분, 과세요건 판단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 흐름도>

